



	실병관리청	보	도 참	할 고	사로 모
배 포 일	2020. 11. 10.	. (총 41매)	담당	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팀 장	흥 정	익	전	화	043-719-9370
담 당 자	진 여 워.	최 은 경	인	<u>~</u> r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1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7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수는 27,653명(해외유입 3,988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31명으로 총 25,160명**(90.9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2,008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중 환자는 54명이며,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485명(치명률 1.75%)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71		1	1	3	4	0	0	0	18	3	1	4	0	2	0	2	0
누계	23,665	5,923	541	7,107	954	456	409	120	64	4,964	288	155	583	122	152	1,519	268	40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11.1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구분	합계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9	0	5	6	18	0	0	8	21	11	18	
누계	3,988	26	1,980	726	1,128	111	17	1,868	2,120	2,215	1,773	
T/1	3,900	(0.7%)	(49.6%)	(18.2%)	(28.3%)	(2.8%)	(0.4%)	(46.8%)	(53.2%)	(55.5%)	(44.5%)	

<sup>\*</sup> 아시아(중국 의) : 필리핀 1명(1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 1명(1명), 요르단 2명(2명), 유럽 : 프랑스 2명(1명), 폴란드 3명, 이탈리아 1명, 아메리카 : 미국 16명(13명), 멕시코 1명, 과테말라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환자"	사망자
11.9.(월) 0시 기준	25,029	2,044	57	480
11.10.(화) 0시 기준	25,160	2,008	54	485
변동	(+)131	(-)36	(-)3	(+)5

- \* 11월 9일 0시부터 1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고유랑(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心就到此处处此

- □ **11월 10일**(12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붙임 1의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참조
-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관련하여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보험사 괸	·련	추가전파			
구분	계	직원 (지표환자 포함)	가족	동일건물 이용자	지인 등	이용자 및 지인 가족	
전일	34	15	7	2	7	3	
금일	36(+2)	15	7	2	7	5(+2)	

○ **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와 관련하여 11월 8일 이후 격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8명이다.

구분	계	이용자 (지표환자포함)	징사장	방문자	가족 및 지인 등
11.8일	36	20	7	1	8
금일	38(+2)	22(+2)	7	1	8

○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6명이다.

			락ル유나	음식점 모임			
구분	계	방문자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기족및재인	방문자	종사자	가족 등
전일	44	13	4	12	3	-	12
금일	46(+2)	13	4	14(+2)	3	-	12









-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하여 11월 7일 첫 확진자 발생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 (구분) 가족 4명(지표환자 포함, 학생 3명, 학생가족 2명, 강사 1명, 지표환자 지인 2명
  - \*\* **(추정감염경로)** 근원환자 → 가족 → 학원, 학교, 노인일자리창업센터 → 학생의 가족으로 추가 전파
- **수도권 중학교/헬스장**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3명\***이다.

			학교 관련			그 외 추	가 전파	
구분	계	학생	교직원	기족	동료	지인	방문객	가족 및 기타
학교	8	3	-	4	-	1	-	-
헬스장A	25(+1)	-	-	-	2	5(+1)	7	11
헬스장B	11	-	-	-	-	1	9	1
연구센터	6	-	-	-	4	-	-	2
독서모임	23(+1)	-	-	-	-	12	6(+1)	5
계	73(+2)	3	-	4	6	19(+1)	22(+1)	19

- \* (지역) 경기 21명, 서울 48명(+2), 광주 2명, 제주 1명, 인천 1명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과 관련하여 격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전 확진자는 총 131명이다.

구분	계	간병인 및 직원	환자 및 이용자	가족 및 지인
안양시 일가족	4	-	-	4
남천병원	23	3	11	9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34	8	13	13
오산메디컬재활요양병원	31(+4)	6(+3)	25(+1)	-
아이사랑어린이집 관련	18	2	2	14
금호노인요양원	21(+17)	5(+3)	16(+14)	-
총계	131(+21)	24(+6)	67(+15)	40

• (위험요인) 침대 간격 협소, 입소자 마스크 불완전 착용, 종사자와 입소자 간 신체적 접촉 빈도 높음



- 3 -







#### 地震 अध लख्य मंग

- **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 (구분) 직원 2명(지표환자 포함), 방문자 3명, 가족 5명, 지인 4명, 기타 2명, 지인의 동료 1명(+1)
- **강원 원주시 일가족과** 관련하여 11월 2일 이후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구분	계	지표환자 및	추가전파						
72	71	가족	지인	지인가족	직장동료	직장방문객	기타*		
11.2일	33	11	9	4	2	2	5		
금일	34(+1)	11	9	4	3(+1)	2	5		

- \* 기타: 지인의 접촉자
- **경남 시천시 부부와** 관련하여 11월 8일 첫 환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 (일자별) 11.8일 2명, 11.10일 9명 (구분) 경로당 7명(지표환자 포함, 기족 1명, 지민 1명, 지표환자 가족의 접촉자 2명
  - \*\* (추정감염위협요인) 경로당에서 다과 및 대화로 추정
- 경남 창원시 가족모임\*과 관련하여 격리해제 전 검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I			기족 모임		추가 전파
	구분	계	(지표환자 포함)	가족 및 지인	기타
	전일	16	9	5	2
	금일	18(+2)	11(+2)	5	2

- \* 제사(창원시)에 참석한 창원시/고양시 가족 모임
- \*\* **(지역)** 경남 14명(+2), 경기 4명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65개 병원 731명** (11.9일 16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
- 아울러 혈장치료제 개발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혈장 확보를 위해 다음주 11월16일(월)부터 3주간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있을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하면서,
-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 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 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명부 미작성,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마트** 내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 마트 직원들이 판촉 행사를 홍보하거나 고객을 응대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제품을 포장할 때 손가락에 침을 묻혀 비닐봉지를 벌리는 행위가 있었으며, 시식 코너에서는



- 5 -







地震 अध लख्य मंग

손님 다수가 시식대 앞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식하며 직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동 중에 취식하기도 하였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전파되는 것을 차단해주는 "가장 쉽고 확실한 예방 백신"이다.
- 가급적 실내 시설은 물론,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특히,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기온 저하로 인한 환기 부족, 실내 활동 증가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내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 상황이다.
- □ 아울러, **마스크 착용**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해**될 예정이다.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10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의 경우, 1달간의 계도기간 올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 국민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2일까지 1달 계도기간 운영
- 11월 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보다 확대되었다.









-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 □ 최근 **집단발생 사례**를 보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 따라서, **마스크 벗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특히, **식사, 음료, 운동, 소모임, 흡연** 시와 **직장·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내 공용 공간 등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집단발생 사례	위험요인	예방법
식당	식사 및 음료 섭취 중	식사 때는 말없이, 대화 시에는 마스크 쓰기
사우나/수영장	공용공간 이용 시 등	목욕탕 외 탈의실 등 공용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준수, 대화 및 음식물 섭취 자제
종교시설	소모임이나 식사 시	소모임 및 식사 자제
실내 체육시설	비말발생이 쉽고 마스크착용이 어려우며, 공용공간 이용 시	출입시 발열체크, 환기, 공용공간 소독, 운동 중 대화자제, 공용공간 마스크 착용
콜센터/증권·보험사	장시간 전화 상담 및 공용공간 이용 시	마스크 착용, 환기, 공용공간 소독,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두기
예체능 학원	무용, 음악, 태권도 등 비말 발생 이 쉽고,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	마스크 착용, 환기, 공용공간 소독,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거리두기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첫째,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으며,











#### 心心 अध्या अध्या में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다.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현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피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	▲대중교통 ▲집화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 \* [붙임 3]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참조
- 둘째,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은
-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이다.
- 그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또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예외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음식·음료를 <b>먹거나 마실 때</b>
	•수영장·목욕탕 등 <b>물속·탕 안에 있을 때</b>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예외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상황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b>수어통역을 할 때</b>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b>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b>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셋째, **마스크의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은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 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한다.
  -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다.
  - 다만,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넷째, 마스크 미착용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는
  -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 9 -







地北北 子儿 心地让 小到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 다섯째, **과태료 부과 금액**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횟수에 관계없이)되며,
-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 (외국 과태료 부과액)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 [불임 기 참조
- 마지막으로,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 등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다른지 여부는
  -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과태료 부과 대상 등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의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확인(11월중)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









- □ 추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에 마스크 비치 추진 따라, 국민의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 노인요양시설·고아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사회복지재단), 경찰관· 군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비치하고, 주민센터, 도서관, 버스·철도역·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등의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다.
- 아울러, **마스크 의무화 시설인 의료기관,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 비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해제된 후 직장 및 일상으로의 순조로운 복귀를 돕고자 격리해제 시 지자체가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였다고 안내하였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PCR 검사 기준뿐만 아니라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격리 해제가 가능하며 이때 PCR 검사 기반의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나, 일부 기관·시설에서는 임상경과 기준으로 격리 해제된 자가 복귀하고자 할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확진자가 PCR 검사 또는 임상경과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 해제될 때 필요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지침 제9-3판에 수록하였고,



- 11 -







#### 地沙社 到 心过让 사회

지자체 및 격리시설(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관계자가 격리기간 동안 확진자에게 이를 안내하여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연말 행사 및 모임이 중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연말 모임이나 **각종 행사**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거리두기,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지켜주시고, 행사 • 모임을 참석한 후에는 증상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발열·기침 등 의심 중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 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3.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 4.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Q
  - 5.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 6.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7. 외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사항
  - 8.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 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 10.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11.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일일 확진자 현황 (11.10. 0시 기준, 27,65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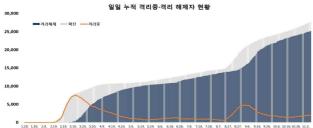
##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총계"		결과 역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TE	54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6	로파 등 0	
11.9.(월) 0시 기준	2,709,199	27,553	25,029	2,044	480	25,802	2,655,844	
11.10.(화) 0시 기준	2,723,960	27,653	25,160	2,008	485	27,855	2,668,452	
변동	+14,761	+100	+131	-36	+5	+2,053	+12,608	

- \* 11월 9일 0시부터 1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11.10. 0시 기준, 27,653명)

## <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	신규	확진자누계	(9/)	인구10만명당
시역	국내발생	해외유입	확신자구세	(%)	발생률 <sup>*</sup>
서울	32	3	6,407	(23.17)	65.82
부산	1	0	603	(2.18)	17.67
대구	1	0	7,198	(26.03)	295.43
인천	3	0	1,070	(3.87)	36.20
광주	4	1	524	(1.89)	35.97
대전	0	0	445	(1.61)	30.19
울산	0	0	166	(0.60)	14.47
세종	0	0	82	(0.30)	23.95
경기	18	15	5,727	(20.71)	43.22
강원	3	0	319	(1.15)	20.71
충북	1	1	203	(0.73)	12.69
충남	4	0	658	(2.38)	31.00
전북	0	0	171	(0.62)	9.41
전남	2	0	198	(0.72)	10.62
경북	0	1	1,595	(5.77)	59.91
경남	2	0	359	(1.30)	10.68
제주	0	0	60	(0.22)	8.95
검역	0	8	1,868	(6.76)	-
총합계	71	29	27,653	(100)	53.34

<sup>\*</sup>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댗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역
격리 중	2,008	625	32	49	51	14	14	6	3	542	63	21	127	11	21	14	47	1	367
격리해제	25,160	5,703	556	6,953	1,008	507	425	158	79	5,086	253	179	523	159	175	1,524	312	59	1,501
사망	485	79	15	196	11	3	6	2	0	99	3	3	8	1	2	57	0	0	0
합계	27,653	6,407	603	7,198	1,070	524	445	166	82	5,727	319	203	658	171	198	1,595	359	60	1,868

<sup>\* 11</sup>월 9일 0시부터 11월 10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sup>※</sup>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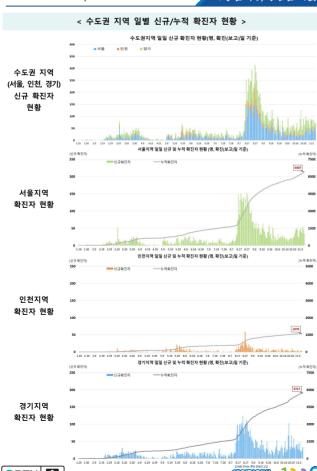
- 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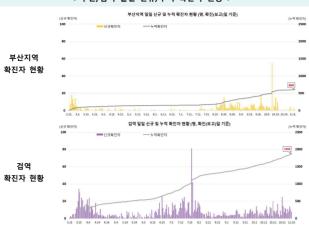


#### 地震 安里 むなむ 사회





### <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心的主动。此处此外到

# ③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1.10.0시 기준, 27,653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7	구 분		금일 신규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100	(100)	27,653	(100)	53.34			
성별	남성	56	(56.00)	12,940	(46.79)	50.03			
	여성	44	(44.00)	14,713	(53.21)	56.62			
	80세 이상	5	(5.00)	1,197	(4.33)	63.03			
	70-79	9	(9.00)	2,217	(8.02)	61.46			
	60-69	15	(15.00)	4,371	(15.81)	68.90			
	50-59	13	(13.00)	5,049	(18.26)	58.26			
연령	40-49	12	(12.00)	3,748	(13.55)	44.68			
	30-39	13	(13.00)	3,478	(12.58)	49.37			
	20-29	21	(21.00)	5,337	(19.30)	78.41			
	10-19	9	(9.00)	1,527	(5.52)	30.91			
	0-9	3	(3.00)	729	(2.64)	17.57			

<sup>\*</sup> 성발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1.10.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7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5	(100)	485	(100)	1.75		
선별	남성	3	(60.00)	255	(52.58)	1.97		
02	여성	2	(40.00)	230	(47.42)	1.56		
	80세 이상	3	(60.00)	245	(50.52)	20.47		
	70-79	1	(20.00)	157	(32.37)	7.08		
	60-69	1	(20.00)	55	(11.34)	1.26		
	50-59	0	(0.00)	22	(4.54)	0.44		
연령	40-49	0	(0.00)	4	(0.82)	0.11		
	30-39	0	(0.00)	2	(0.41)	0.06		
	20-29	0	(0.00)	0	(0.00)	0.00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sup>\*</sup>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sup>※</sup>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 일별 사망자 현황 >



#### < 위중증 현황 >

 不분
 10.28 10.29 10.30 10.31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1.10

 계
 52 53 51 54 54 51 49 52 53 51 50 53 58 57 54

구분	위중증	(	%	)	
계	54	(	100.0	)	
80세 이상	9	(	16.7	)	
70-79세	25	(	46.3	)	
60-69세	13	(	24.1	)	
50-59세	5	(	9.3	)	
40-49세	2	(	3.7	)	
30-39세	0	(	0.0	)	
20-29세	0	(	0.0	)	
10-19세	0	(	0.0	)	
0-9세	0	(	0.0	)	



- 1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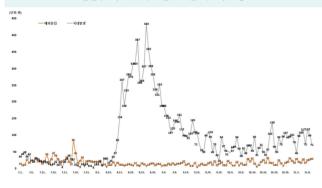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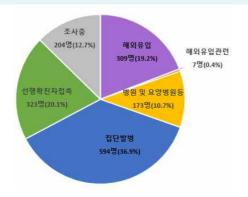
心部 到, 电磁让 从到

## 5 감염경로





# < 최근 2주간 (10.28일 0시~11.10일 0시까지 신고된 1,610명) 감염경로 구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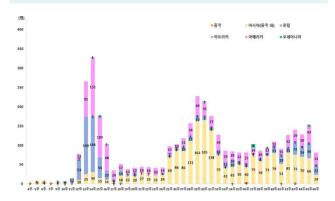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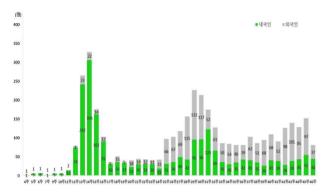






## < 해외 유입 확진자 현황 >







- 21 -







## 心红 到 电对比 外到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b>l(</b> 단위:	명, %)				
지역	누계	해외 유입	소계	집단 발 신천지 관 련	<b>생 관련</b>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기타*	조사중	샌규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서울	6,407	484	3,529	8	3,444	77	1,256	1,138	35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부산	603	62	424	12	357	55	58	59	1	<ul> <li>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총남 22명 등</li> <li>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li> </ul>
대구	7,198	91	5,418	4,512	902	4	934	755	1	<ul> <li>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li> <li>클럽 관련(277명)</li> <li>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li> </ul>
인천	1,070	116	699	2	688	9	135	120	3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광주	524	68	390	9	375	6	34	32	5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대전	445	36	270	2	268	0	87	52	0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울산	166	46	84	16	64	4	21	15	0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세종	82	18	50	1	48	1	10	4	0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경기	5,727	763	3,360	29	3,263	68	894	710	33	< 최근 발생 주요 사례> -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 관련(114명)
강원	319	31	205	17	187	1	47	36	3	<ul> <li>경기 94명, 서울 19명, 경남 1명</li> <li>수도권 중학교/헬스장 관련(71명)</li> <li>서울 47명, 경기 21명, 광주 2명 등</li> </ul>
충북	203	48	94	6	81	7	39	22	2	<ul> <li>경기 용인시 동문골프모임 관련(68명)</li> <li>서울 33명, 경기 26명, 전북 3명 등</li> <li>충남 아산 직장 관련(41명)</li> </ul>
충남	658	75	392	0	391	1	116	75	4	<ul> <li>경기 31명, 광주 4명, 경기 3명 등</li> <li>대구 서구 대구예수중심교회 관련(38명)</li> </ul>
전북	171	49	78	1	77	0	27	17	0	<ul> <li>대구 32명, 전북 4명, 경북 1명 등</li> <li>서울 동대문구 에이스희망케어센터 관련(36명)</li> <li>서울 34명, 경기 2명</li> </ul>
전남	198	46	114	1	111	2	26	12	2	• 서울 영등포구 증권사 관련(26명) • 서울 15명, 경기 11명
경북	1,595	76	1,177	565	612	0	200	142	1	<ul> <li>경남 창원시 가족모임 관련(18명)</li> <li>경남 14명, 경기 4명</li> <li>서울 관악구 삼모스포렉스2 관련(18명)</li> </ul>
경남	359	91	221	32	186	3	22	25	2	<ul> <li>서울 13명, 인천 4명, 경기 1명</li> <li>강원 원주시 의료기기 판매업 관련(13명)</li> <li>강원 13명</li> </ul>
제주	60	20	15	0	14	1	19	6	0	• 인천 119안전센터 관련(11명) • 인천 9명, 경기 2명
검역	1,868	1,868	0	0	0	0	0	0	8	<ul> <li>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47명)</li> <li>서울 41명, 경기 3명, 세종 3명</li> <li>서울 강서구 보험사 관련(31명)</li> </ul>
*17	27,653	3,988	16,520	5,213	11,068	239	3,925	3,220	100	* 서울 21명, 경기 9명, 인천 1명 • 경남 창원시 일가족 관련(28명)
합계	(%)	(14.4)	(59.7)	(18.9)	(40.0)	(0.9)	(14.2)	(11.6)	100	<ul> <li>경남 28명</li> <li>대구 동구 오솔길다방 관련(10명)</li> <li>대구 10명</li> </ul>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40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다위·명

	누적	바사	시그	<단위: · 발생 지명류 이구10만명5			
					치명률	인구10만명당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발생자 수*	
미국	9,763,730	235,562	258,972	2,270	2.41	2,966.80	
인도	8,553,657	126,611	45,903	490	1.48	624.95	
브라질	5,653,561	162,269	63,536	1,163	2.87	2,661.75	
러시아	1,796,132	30,793	21,798	256	1.71	1,248.18	
프랑스	1,752,980	40,119	38,619	270	2.29	2,676.31	
스페인*	1,328,832	38,833	- 0.007	-	2.92	2,863.86	
아르헨티나	1,236,851	33,348	8,037	212	2.70	2,742.46	
영국	1,192,017	49,044	20,572	156	4.11	1,779.13	
콜롬비아	1,136,447	32,595	8,714	190	2.87	2,282.02	
멕시코	961,938	94,808	6,810	485	9.86	727.09	
이탈리아	935,104	41,394	32,614	331	4.43	1,579.57	
페루	920,010	34,840	2,507	57	3.79	2,796.38	
남아프리카공화국	737,278	19,809	1,372	20	2.69	1,268.98	
이란	682,486	38,291	9,236	459	5.61	824.26	
독일	671,868	11,352	13,363	63	1.69	815.37	
폴란드	546,425	7,872	24,785	236	1.44	1,437.96	
칠레	521,558	14,543	1,581	44	2.79	2,784.61	
벨기에	500,694	13,055	9	26	2.61	4,316.33	
이라크	498,549	11,327	2,530	44	2.27	1,234.03	
우크라이나	469,018	8,565	8,687	115	1.83	1,070.82	
인도네시아	437,716	14,614	3,880	74	3.34	162.42	
방글라데시	420,238	6,067	1,474	18	1.44	260.37	
체코	414,828	4,858	3,608	177	1.17	3,913.47	
네덜란드	409,573	7,994	5,659	44	1.95	2,395.16	
카자흐스탄**	155,876	2,306	-	-	1.48	838.04	
스웨덴*	146,461	6,022	-	-	4.11	1,450.11	
일본	108,084	1,818	998	6	1.68	85.17	
중국	86,267	4,634	22	0	5.37	6.07	
우즈베키스탄	68,788	585	195	4	0.85	209.72	
키르기스스탄	63,390	1,182	571	5	1.86	1,022.42	
싱가포르	58,056	28	2	0	0.05	984.00	
말레이시아	40,209	286	852	4	0.71	123.72	
호주	27,658	907	6	0	3.28	110.19	
태국	3,840	60	3	0	1.56	5.54	
베트남	1,213	35	0	0	2.89	1.25	
대한민국	27,653	485	100	5	1.75	53.34	
* 국가별 총 인구 수: 유	위엔인구기금(UNFP	A) '19년 기준, I	대한민국 '20.1월	월 행정안전부 <b>-</b>	주민등록인구현황	바 기준	

<sup>\*\*</sup>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붙임 3

#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 및 처분 기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	행 단계	전국 유	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아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행사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실내 전체, 2 유지가 되지	m 이상 거리

<sup>\*</sup>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 확대

#### □ 거리두기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적용 시설 전·후 비교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 다중이용시설 등 집합제한시설 12종 시설		<u>▶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23종</u>
	(기 안내)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현팅포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딩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율법 품살통 등 유흥주점, 단단주점, 건성주점, 골라텍, 헌팅모자,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 음식점·취개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 하기-신고면적150㎡ 이상)
적 <del>용</del> 시설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 기관, 목욕장집, 공연장, 영화관, 놀이 공원·위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 체육시설, 아-미용업, 삼점·마트·백화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 대중교통	$\Rightarrow$	<u>▶</u> <좌동>
	▶ 집회·시위장	$\Rightarrow$	
	▶ 의료기관 <u>,&lt;신설&gt;</u>	$\Rightarrow$	▶ 의료기관 <u>, 약국</u>
	<ul><li>▶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li></ul>	$\Rightarrow$	<u> </u>
	<u>▶ &lt;신설&gt;</u>	$\Rightarrow$	<u>▶</u> 종교시설
	<u>▶ &lt;신설&gt;</u>	$\Rightarrow$	▶실내 스포츠 경기장
	<u>▶ &lt;신설&gt;</u>	$\Rightarrow$	
	<u>▶ &lt;신설&gt;</u>	➾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sup>\* 10.4</sup>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10.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 □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처분 기준 전·후 비교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4에 따른 대상자별 정의
-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 (이용자) 해당 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관리자·운영자, 종사자 등을 포함)

구분	종전		변경 (11.13일부터 적용*)
행정 명령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의 집회· 집합 제한 또는 금지조치 * 운영 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포함	₽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제1항제2호의2에 의한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조치 * 필요시 별도의 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가능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	위반 시 제80조(벌칙) 제7호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고발 조치 및 입원치료비, 방역비 순해배상 청구	⇨	위반 시 • (관리자운영자) 제83조(과태료) 제2항에 의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 • (이용자) 제83조(과태료) 제4항에 의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이상) 10만원

\* 단, 마스크 착용 외 다른 방역수칙 위반은 11.7일부터 적용(11.1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참고자료 참조)



- 25 -







#### 

#### 붙임 4

### 마스크 착용 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관련 FAO

\* 다음 PAQ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 행정명령 내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관찰 지자체의 행정명령 확인 필요)

#### 1

##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 Q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 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음

#### Q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 관리시설(중대본 발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대상으로 함
- 그 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됨
- 다만,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람









## Q3.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과중되어 부과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시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 Q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 단,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야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또한, 과태료 부과·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대료 부과에서 예외가 됨
- Q5.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임
-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소명이 가능함



- 27 -







#### 心部 到 电磁计 外到

- Q6.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Q7.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요?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요?
-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권고함
-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밀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함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Q8.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 되나요?
-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비말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지침 상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님
  - \*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상이하므로 유의









### Q9.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임

#### Q10.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 착용해야하나요?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됨
-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는 일정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스크를 벗을 때에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함
- Q11. 흡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할 수 없는데, 흡연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 음식물 섭취에 해당되므로 **흡연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의 예외 **사항으로** 인정 됨
  - \* 흡연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의 흡연 시를 의미함
-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휴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29 -







#### 心的主动。此处此外到

#### Q12.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함
- 또한,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 Q13.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한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함
- 대화, 소리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로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함
- Q14.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다만,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하여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여성가족부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9.10.) 참조)









## Q15.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런닝머신, 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 및 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
-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함
-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함
- Q16.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함
-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Q17.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시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되나요?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적인 사진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하여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 가능



- 31 -







#### 心心 आ लेखी मेर्

- Q18.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 받나요?
- 이용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위반 당사자(이용자) 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 및 중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다만,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
  -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2

### 지도 · 단속 관련

## Q1.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 단속은 어디에서 하나요?

- 감염병예방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과대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과태료 부과는 시설의 소관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한 부서 에서 처리

#### Q2.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 적발 시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나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등 위반행위 적발 시, 먼저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하고 불이행 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함









#### Q3.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O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적발 →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통지 → 이의제기 안내(60일이내)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Q4.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국가가 있나요?

-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 (1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 (약 18만원), 이탈리아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최소 50유로(약 7만원)













#### 地震 अध्या अधि मेर्

#### 붙임 5

#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sup>6</sup>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sup>©</sup>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임명장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 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붙임 6 마스크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2020.11월 안내서 2판 기준]

- ) 마스크, 이<mark>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mark>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실외) <sup>®</sup>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GCE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 다본 등록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리,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마스크 석동 병장당당에 따른 파대료 무파기준 안대》

   행정병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김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행정명병기간) 김염병 위기정보 수준 "경제실각" 단계에서 행정명형권자보건복자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사도지사 또는 시장조수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 위반영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어병시 화태로 부과 (과태로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라운영자 30만원 이하다자 위반 150만원 가 이상 위반 300만원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P4, KP6) 등), 비발자단용 마스크(KP4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화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우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u>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u>)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종교시설	종교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고위험 사업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HIOITI	LINEH HICKMINI C SHINI CO NOI A A S

-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에T. 이식' 이 'NLTN'' 항공을 본 백' '진진 수술, 지금, 무약 등 인료형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는데에 어떻때로 한장, 방송 출연(살망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활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활영(회영적, 법에도 교장 등 공석 회사 시 당사자(회장 등 수여 당사자, 합의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여통역을 **할 때** '윤통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예외 상황

  -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 35 -







心部 到 电双键 사회

## 붙임 7

# 외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사항

<b>국가</b> (시행일)	과태료 금액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
영국 (7.24)	(1차 위반) 200파운드(약 30만원) *4월 9배 남부시 10마운드로 강면 (2차 위반) 400파운드(약 60만원) *1차 위반 이후 감면 없음 (3차 위반) 800파운드(약 120만원) ※ 최대 6,400파운드 부과약 960만원	다양교통	*11세 미만인 자 *신체작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게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자
프랑스 (8.28)	135유로(약 18만원)	<ul> <li>밀패된 실내공간대중교통 소매점 소판생덕 유위점 45가례 중교사점 교육생 관광서 박물란 마음한 도서관 살튀스포츠시점 숙박사절 영화관 등)</li> <li>실외 공간</li> </ul>	▲11세 미만인 자 ▲장애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진단서 등 의학적 소건을 가진 자* * 단 1m 이상 거리두기, 거침에질 손위성 등 병역수적 준수
<b>독일</b> (8.27)	최소 50유로(약 7만원) *연방주마다 상이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 *연방주마다 상이	▲신체작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이탈리아 (10.2)	최소 400유로(약 53만원) 최대 1000유로(약 136만원)	▲실내 전체 이외를 포함한 공공장소	▲6세 미만인 자 ▲산체적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아래운 사람
러시아 (10.27)	5천 루블(약 8만원)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	
스페인 (5.26)	100유로(약 13만원)	▲대중교통 실내 및 실익 공공장소 ▲1.5m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6세 미만인 자 ▲신체작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여러운 자









## 붙임 8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리플릿



겉면,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마스크 권고 기준」



내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37 -







心就到此处处此

#### 붙임 9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식품의약품안전처)





- **★ KF94 마스크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 KF80이상 마스크
  -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가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U 비밀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더운 여름철·호흡이 불편한 경우에 사용이 편리
  - 건강취약계층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 기저질환자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산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 미세입자 차단

호흡 용이성 -20













입과 코를 가리고

착용중 마스크 만지지 않기 만진 후 깨끗이 손씻기









붙임 10

####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39 -







心就到此处处此

### 붙임 11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답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수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판설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축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낙제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간념 가능성이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이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지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간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간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관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제·보도**가. 봉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제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제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건이나 영상을 취제·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훈만,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항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다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롱"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폴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감엄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엄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 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위재 시 공동위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増え

값염병의 예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최조의(강염병위기 시 정보조끼기 시 경보조기)
제최조의(강염병위기 시 정보조끼기 시 경보조기)
집 열병면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환산으로 인하여 『제 난 및 안전관리 기본병』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 건 전도의 교기관 및 접충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전보를 정보를 정보통신장 계계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인으로 생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성 2000. 3. 4.) 2000. 8. 11., 2002. 9. 29〉
② 설병관리정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휴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를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계 정보는 서제하여만 한다. (신설 200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병관리정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하는 경우에는 실병관리정장, 시·도지 상당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방을 이용하여 이의신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3. 4., 200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상하다 나는 경우
② 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경칭 등 필요한 조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수세와 의신성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속소선을 2015. 7. 6.]
1간설병의 예방 및 휴리에 포함 보통 보통으로 기업하여 병향 및 휴리에 또한 병원 등에 보하여 필요한 사항은 1간을 되었다. (기장 2020. 3. 4., 2020. 9. 29〉

값념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값념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값연방위기 시 정보문제 병위 및 절차 등)
① 절병관리경장은 법 제3조로의2계1항에 따라 정보를 포개하는 경우에는 값염병 위기상황. 간염병의 특성 및 역
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계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익선정을 하려는 사람은 법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본본신설 20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본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척 〈보건복지부팅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 성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 (春고2) 각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질병정보 (국내의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정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선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정로, 이동수단, 전료의로기관, 접촉자 현황 등)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41 -







